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4. 2.(금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박희민, 사무관 박영주, 원일웅, 주무관 길선영 ·☎ (044) 201-3670, 3673, 3669	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4. 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‘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’ 속도낸다...국가 균형발전 건인

- 올해 투자선도지구·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공모 착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·확산하고자 ‘2021년 지역개발사업 (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형지원) 공모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○ ‘농산어촌 주거플랫폼’이란 지방 농산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SOC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규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다.

○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방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,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함양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사업*을 들 수 있다.

* 국토부와 LH가 서하초등학교 전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, 이에 더해 지자체가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·제공

□ 국토교통부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·지원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촌협약 및 어촌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도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을 발굴·지원하고,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확산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그간(‘15~’20년)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총 148개 우수 사업을 발굴·지원하여,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.

○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성장촉진지역(70개 시·군)의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* 중 8~11개 내외 사업을 선정, 총 사업비 450억 원 가량을 i)투자선도지구와 ii)지역수요 맞춤형지원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
* “주거(단독형/공동형 공공임대주택) + 생활SOC(문화·체육·복지·의료·공간시설 등) + 일자리”의 결합을 기본으로,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세부 사업계획 수립

○ 공모 접수는 5.17(월)부터 6.25(금)까지 40일간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(rdims.lh.or.kr)을 통해 가능하며,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플랫폼 계획수립을 지원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“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이 읍·면 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,

○ “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급 효과가 큰 우수사업 발굴을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영주 사무관 또는 길선영 주무관(☎ 044-201-3669, 36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

□ 투자선도지구의 정의

-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, 인센티브,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

⇒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, 민간투자를 활성화

※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

-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구

□ 공모대상 및 유형

- (공모대상) 수도권·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대상

* 예시 :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역세권 등

- (발전촉진형) 성장촉진지역 내 읍·면지역에서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

- (거점육성형) 낙후지역 외 지역에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

- (공통요건*) ①교통 등 기반시설, ②성장 잠재력, ③일정규모 투자·고용 창출, ④인근 파급효과, ⑤지역생활 거점, ⑥민간투자 가능성

*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

<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>

유형	발전촉진형	거점육성형
대상지역	성장촉진지역 중 읍·면 지역	낙후지역 외 지역
투자·고용효과*	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이상	1,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이상
지원규모	최대 100억(보조율 100%)	기재부 별도 협의
주요혜택	조세감면(법인세, 소득세 등)	-
	규제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개), 자금지원(지자체), 인허가 지원, 홍보·컨설팅(관광사업) 등	

* 필요시,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·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

참고2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개요

□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의

- 성장촉진지역 사업 중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읍·복합 사업

□ 공모대상 및 유형

- (대상지역) 성장촉진지역*으로 지정된 70개 시·군의 읍·면지역

*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,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·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·고시('19.9월 재지정)

- (지원내용)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을 바탕으로, 입주자 및 지역 주민 수요에 맞춰 필요한 생활SOC(기반시설)를 공급하는 사업

- (공모유형) 종전의 '일반형'과 '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(지역활성화 지역*만 가능)'을 통폐합하여, 올해는 일반형만 공모

* 「지역개발법」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지정('15.3 지정고시, 22곳에 대해 10년 기간)

** 사업예시 :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공간 정비, 고령자 보행로 정비 등

- (지원규모) 사업당 최대 50억 이내*(보조율 100%)

* 최대 50억원 한도에서, 생활SOC 수요, 기존 시설현황 등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필요한 생활SOC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
- (평가) 국토부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→현장확인(인터뷰 포함)→종합평가를 거쳐 선정

- (절차) 공모접수 및 사전컨설팅(~6월) → 서면·현장·종합평가(국토부, 7월) → 선정(7월말)